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13 발의연월일 : 2020. 12. 22.

발 의 자:이병훈·양정숙·박 정

송갑석 · 윤관석 · 이상헌

신영대 · 주철현 · 황운하

이수진(비)・이원택・도종환

김승원 · 남인순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어려운 용어인 "영전"을 국민이 의미를 알 수 있도록 "영전(榮典)"으로 한자어를 병기하여 바꾸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,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1조).

법률 제 호

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 중 "영전"을 "영전(榮典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)	제11조(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)
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	
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	
를 인정하기 위하여 「상훈법」	
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영전</u> 의	<u>영전(榮典)</u>
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	
있다.	